

통합돌봄지원법 입법 이후 지역돌봄체계 구축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준

목차

- 지역통합돌봄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 돌봄통합지원법의 입법적 과제
- 지역통합돌봄과 보건의료 정책
- 장애인의 보건의료 과제

커뮤니티(지역사회)란?

-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빚어낸 고유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체국, 상점, 보건소와 같은 필수 서비스들의 제공 단위가 되는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의 구성 요소

- 공통된 요소를 공유하는 일단의 개인들
- 공식적, 비공식적 연계망들로 구성된 특정지역
- 공동의 이해와 개인적 상호작용의 연계망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들

커뮤니티가 왜 중요할까?

- 건강 인프라를 제공함
- 물리적 환경
 - 대기와 소음, 주거 환경, 교통량, 녹지면적
- 사회적 환경
 - 사회적 자본

그 중에서 사회적 자본!

- 사람들 간 사회적 응집력과 관계의 누적된 경험
 - 상호 신뢰, 수용, 인정, 존경 등
-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지역사회가 건강하지 못함
 -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건강 문제
 - 사회적 고립
 - 폭력

지역통합돌봄 개념

-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2018.11)

대상 및 목표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영유아
- 목표
 - Healthy Aging in (by) the Community
 - 탈원화 –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지역사회로
 - 탈가족화 –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 회복, 재활 – 회복, 재활의 공백과 분절에서 연계

지역통합돌봄의 구성요소

-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
 - 심뇌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 케어 계획 수립, 연계, 조정, 교육상담
 - 우울증, 치매 등 정신건강의 관리
 - 건강행태 개선 및 신체활동 등을 통한 일상생활 기능 향상
 - 방문(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을 포함한 포괄적 건강관리

지역통합돌봄의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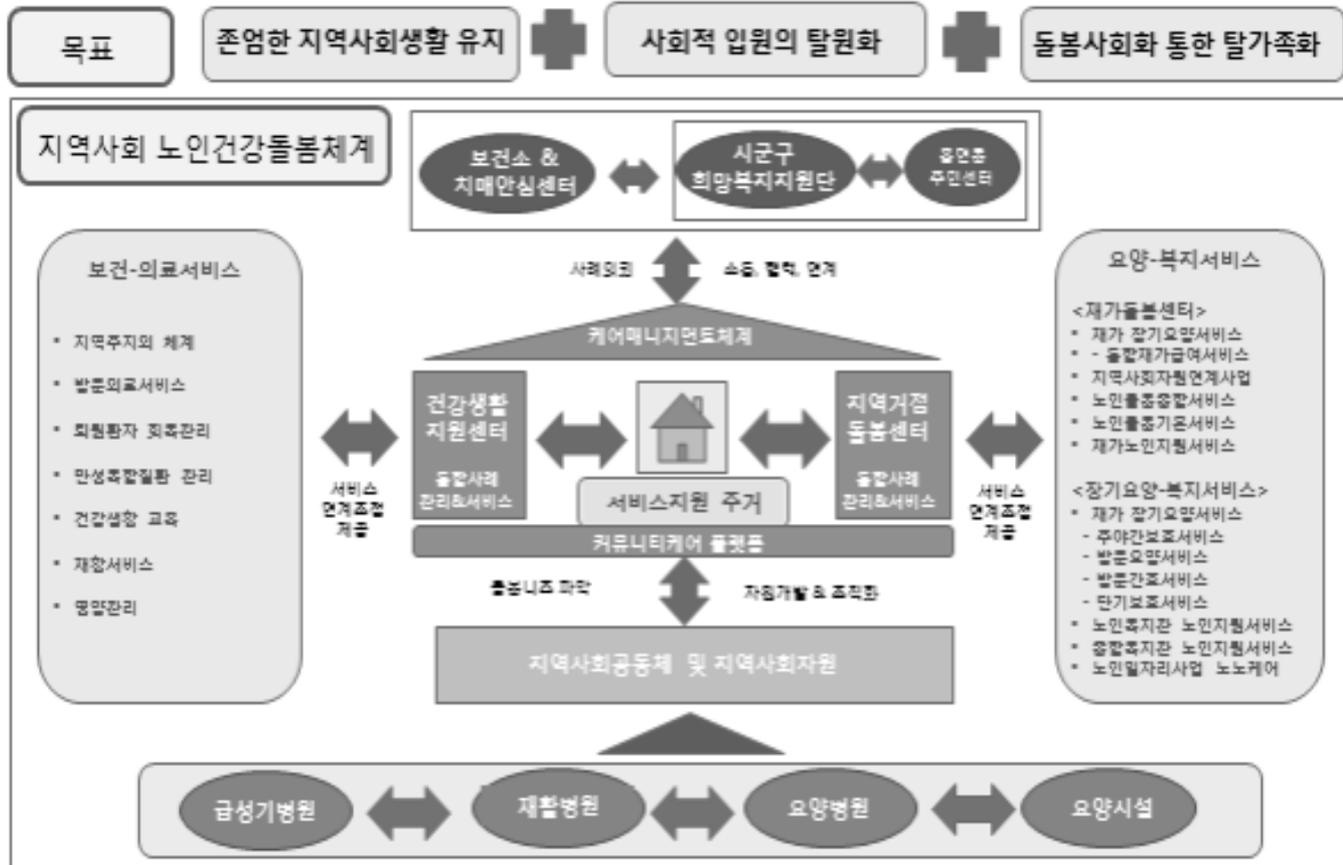
- 요양(Community based long-term care)
 - 사례관리, 연계, 조정
 - 활동 제한 주민에 대한 가사, 간병, 간호, 재활 서비스 제공
 - 정서적 지지, 가족 지지

지역통합돌봄의 구성요소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Social care)
 - 주거, 마을식당
 - 이송
 - 문화, 공원, 사회체육 시설 등

지역통합돌봄체계

-노인-



출처 : 석재은 등. 서울시 거점재가서비스기관 도입방안 연구. 2019

지역 생태계 구축

-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 보건, 요양 등 공공 인프라 확충
 - 일차의료, 요양, 복지 등 민간 부문의 공공성 강화
 - 주거, 마을식당 운영 등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동조합 참여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돌봄통합지원법

- 통합지원의 정의(1장 2조)

- 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 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돌봄통합지원법

-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1장 4조)

-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통합 지원 정책 수립, 시행
 -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지원체계 구축
 - 입원, 입소 이후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 마련
- 시도지사는 인프라 및 자원 확보, 시군구 지원
-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돌봄통합지원법

- 기본계획(2장 5~6조)

-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 5년 주기
 - 인프라, 서비스 확충 방안 포함
 - 보건의료기본법의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
-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 1년 주기
 -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
 - 전달체계, 발굴과 지원체계, 자원 조달,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공급, 관련 기관 간 연계 협력, 조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돌봄통합지원법

- 통합지원 절차(3장 10~14조)

- 신청, 발굴, 조사 등
 - 신청 대상 :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기관 퇴원 직후의 자 등
 - 조사 내용 :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 조사 기관 :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 퇴원환자 등의 연계
 -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장은 퇴원 환자의 통합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종합 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돌봄통합지원법

-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4장 15조)

- 통합지원 관리 기관(보건의료)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기관,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 간호사가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유지 회복을 위한 재활서비스
 - 요양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 호스피스 사업

돌봄통합지원법

-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4장 16조)

- 통합지원 관리 기관(보건의료)
 - 호스피스 사업
 - 방문 구강관리
 - 약사가 약국,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 건강관리 및 예방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 질환 등 예방,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
 -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 연계를 위해 통합 방문기관 지정 등 통합지원 기반 조성

돌봄통합지원법

- 통합지원 기반 조성(5장 22조, 24조)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의무
 -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연계 가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치매정보시스템, 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의 양성
 - 통합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 강구

목차

- 지역통합돌봄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 **돌봄통합지원법의 입법적 과제**
- 지역통합돌봄과 보건의료 정책
- 장애인의 보건의료 과제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조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4조)

- 여건 조성
 - 조성해야 할 범주 및 항목 구체화
- 통합 지원 정책 수립
 - 보건 의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체계 연계 구체적으로 제시
- 인프라 및 자원 확보
 - 확충해야 할 보건 의료 관련 인프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고 지원
 - 취약 지역에 대한 국고 비율 차등 지원 방안 등 제시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조문

- 통합지원 절차(10~14조)

- 신청, 발굴, 조사 등
 -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도 중복 지원을 제외한 서비스 신청에 대한 규정 제시
 -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 필요도에 대한 조사 주체 제시
- 퇴원환자 등의 연계
 - 정부 지원 기관 연계 의무화, 기관의 수가와 지원 기준으로 사용
- 종합 판정 등
 - 종합 판정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 참여 및 설명 의무화 등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조문

-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15~16조)

- 통합지원 관리 기관(보건의료)
 -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및 기준 제시
 - 의료기관에 방문이 어려운 통합지원 대상자의 간호사의 의료서비스 가능 범위 및 방안(의사의 비대면 동의 등) 제시
- 건강관리 및 예방 등
 - 보건기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이 통합 지원사업에 포함된다는 내용 명문화
 - 통합 방문기관으로 보건기관 당연 지정 및 인구, 면적 등 접근성 고려 일정 수 이상의 일차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규정 마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조문

- 통합지원 기반 조성(20~21조)

- 통합지원협의체
 - 지역보건법,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제시
- 전담 조직 등
 - 시군구 전담 조직과 보건소 및 보건기관 통합 운영 방안 제시(통합사례관리, 방문서비스, 데이케어센터 운영, 상호 인력 파견 등)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조문

- 통합지원 기반 조성(22~24조)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 통합지원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등의 통합적 운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전담 조직 등
 - 통합 사례관리사, 코칭 전문가 등 양성이 필요한 인력의 자격 규정과 양성 방안 등을 제시
 - 기존 공공 보건의로 인력에 대한 돌봄 보수교육 의무화 방안 및 기존 보건의로 인력 보수교육에 포함하는 방안 제시
 - 보건복지인재원, 공공보건의료교육센터 등 기존 보건의료 관련 교육훈련기관에 돌봄 교육 과정 편성 방안 등 제시

관련 보건의료 법률

- 보건의료기본법

- 기본계획 수립(5~6조)
 - 보건의료기본법 15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22조)
 - 보건의료기본법 53-55조 보건의료 통계 정보 관리 : 정보화 시책 수립, 시행과 보건의료실태조사 규정

관련 보건의료 법률

- 의료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4조)
 - 의료법 3조 의료기관 : 돌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될 의료기관 규정
- 통합지원 절차(10~14조)
 - 의료법 2조 의료인의 역할에 대한 규정
 - 의료법 3조 의료기관 규정
 - 의료법 4조, 24조 의료인의 의무 : 최선의 진료, 설명의 의무 등
- 전문인력의 양성(24조)
 - 의료법 4-7조 의사, 간호사 등 면허 규정

관련 보건의료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4조)
 - 국민건강보험법 14조 업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규정
- 기본계획 수립(5~6조)
 - 국민건강보험법 3조의 2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 통합지원 절차(10~14조)
 - 국민건강보험법 41조, 41조의 5 : 요양급여의 종류 규정 등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22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규정 없음

관련 보건의료 법률

- 지역보건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4조)
 - 지역보건법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책무 규정
- 기본계획 수립(5~6조)
 - 지역보건법 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수립

관련 보건의료 법률

- 지역보건법

- 통합지원 절차(10~14조)
 - 지역보건법 10~15조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설치, 운영 규정
- 전문인력의 양성(24조)
 - 지역보건법 16조(2) 전문인력 배치 및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관련 보건의료 법률

- 건강증진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4조)
 - 건강증진법 3조 책임 :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건강증진법 5조의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정책 개발, 기금 운영
- 기본계획 수립(5~6조)
 - 건강증진법 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 통합지원 절차(10~14조)
 - 건강증진법 8~19조 금연, 절주 등 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규정

관련 보건 의료 법률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4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6~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역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책무와 기관의 의무 규정
- 기본계획 수립(5~6조)
 - 동법 4조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 전문인력의 양성(24조)
 - 동법 20조 교육 훈련 : 공공보건의료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에 대한 규정

관련 보건의료 법률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4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 규정
- 기본계획 수립(5~6조)
 - 동법 5조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 전문인력의 양성(24조)
 - 동법 9조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 수립, 시행
 - 동법 10조 양성 및 자질 향상 목적으로 양성기관 지원

관련 보건의료 법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4조)
 - 동법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 장애인 건강권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진료, 재활의료 제공 의무 등 규정
 - 동법 18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공재활병원 설치, 운영
 - 동법 19~21조 중앙과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 역할
- 기본계획 수립(5~6조)
 - 동법 6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관련 보건 의료 법률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통합지원 절차(10~14조)
 - 동법 8-12조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주치의 사업 등

관련 보건의료 법률

- 치매관리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4조)
 - 치매관리법 3조 국가 등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시책 수립, 사업 수행 등 책무, 의료인 등의 협조 의무 등
- 기본계획 수립(5~6조)
 - 동법 5조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

관련 보건의료 법률

- 정신건강복지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4조)
 - 정신건강복지법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 정신건강에 대한 시책 수립, 사업 수행,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운영 의무 등 규정
- 기본계획 수립(5~6조)
 - 동법 7조 국가계획 등 수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연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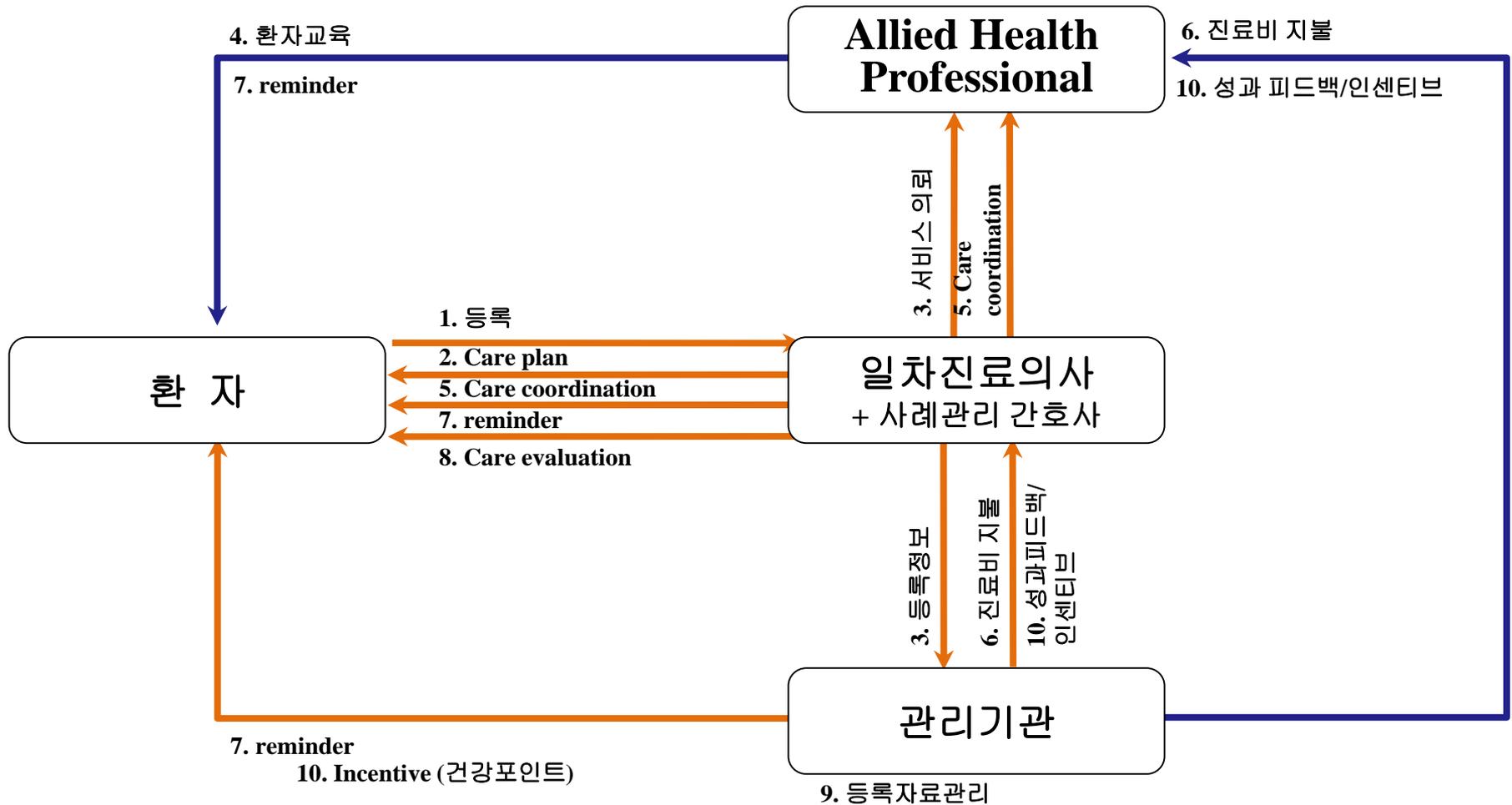
목차

- 지역통합돌봄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 돌봄통합지원법의 입법적 과제
- **지역통합돌봄과 보건의료 정책**
- 장애인의 보건의료 과제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모형

- 의료기관
 - 팀 접근, 포괄적 서비스를 위한 급여 확대
 - Care Plan, Care Coordination, 교육 등
 - 성과 연동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의료제공자에 대한 Practice Incentive Program
- 환자
 - 행태 개선, 자가관리 능력 향상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관리모형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 모형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

- 보건소
 -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기능
 - 규제 및 행정 기능
 - 집단 대상의 보건사업
 - Day Care Center 운영(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주간 보호 및 지역사회 재활센터 기능의 통합적인 운영 필요)
 - 지역사회통합돌봄 거버넌스 운영 또는 참여

지역보건기관 기능 개편

- 소생활권별 주민건강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 만성질환 및 건강 관련 사례관리, 지역사회통합사례관리와 연계
 - 보편방문서비스를 포함한 노인 대상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경증의 인지장애 포함)
 - 대사증후군 등 고위험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된 만성질환관리(장기적으로 인지장애 등 포괄적인 노인건강관리로 발전 필요)
 - 소생활권에서 의원, 재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와 책임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 개념 재구성

구 분	현 재	개 선
공공 의료 정의	시장실패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분야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분야
	보완적	선제적·기본적
제공 기관	지역 내 분절적 의료수행 권역-지역-기초 협력체계 부재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지역-기초 전달체계 수립
대상	취약계층 중심	모든 국민
필수 의료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취약지 ② 취약계층 ③ 취약분야 : 응급, 분만 ④ 신종감염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필수중증의료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② 산모(모성·분만), 어린이 의료 ③ 장애인, 재활 ④ 지역사회 건강관리 ⑤ 감염 및 환자 안전

공공보건의료와 책임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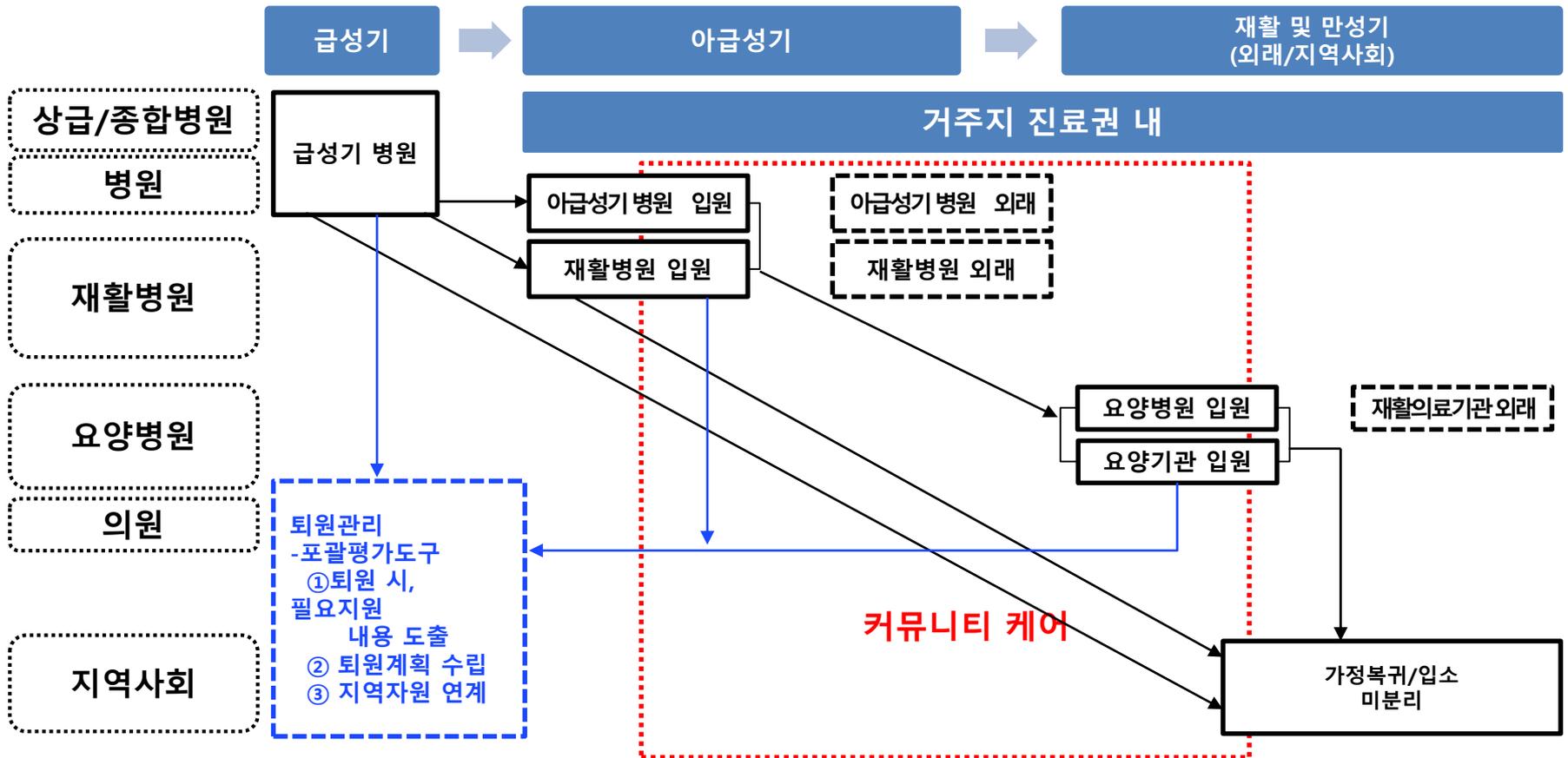
- 책임의료기관 개념

- 필수(중증)의료를 중심으로 진료권 내 인구집단에 필요한 급성기, 아급성기, 회복기 의료서비스를 기획, 연계, 조정,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 권역책임의료기관 : 시도 진료권(국립대학교병원)
- 지역책임의료기관 : 중진료권(시도보다 적고, 시군구보다 큰 진료권)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연계



전달체계



거버넌스

- 중앙정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율, 자원 배분 기준 설정, 자원 형성 및 관리
 - 재정 운용 및 서비스 질 평가 기전 마련
 - 사례 관리 수가 및 기타 서비스 수가 기준 마련
- 지방자치단체
 - 통합된 재정의 운용 책임, 서비스 기관 관리

거버넌스

- 건보공단

- 장기요양 등급 판정,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급여제공계획서 관리, 주기적인 모니터링, 심사/급여비용 지급
- 추가적인 보건복지자원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재가돌봄센터에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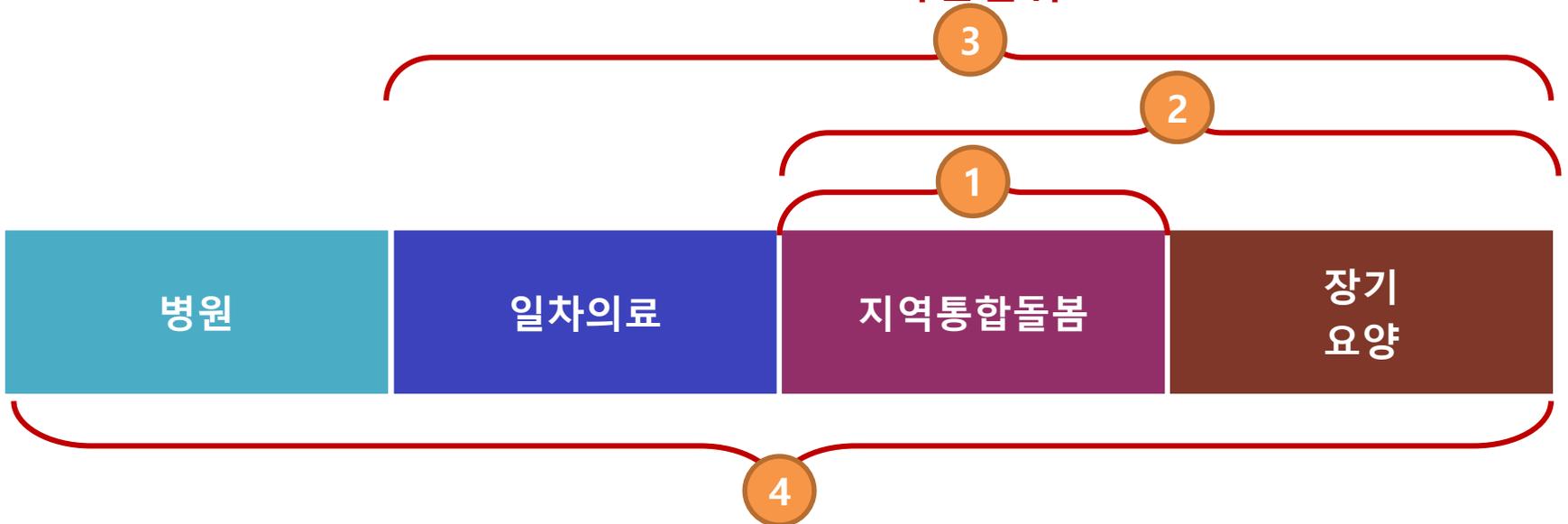
- 재가돌봄센터

-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돌봄서비스 욕구(+)
- 지역돌봄서비스 기획, 평가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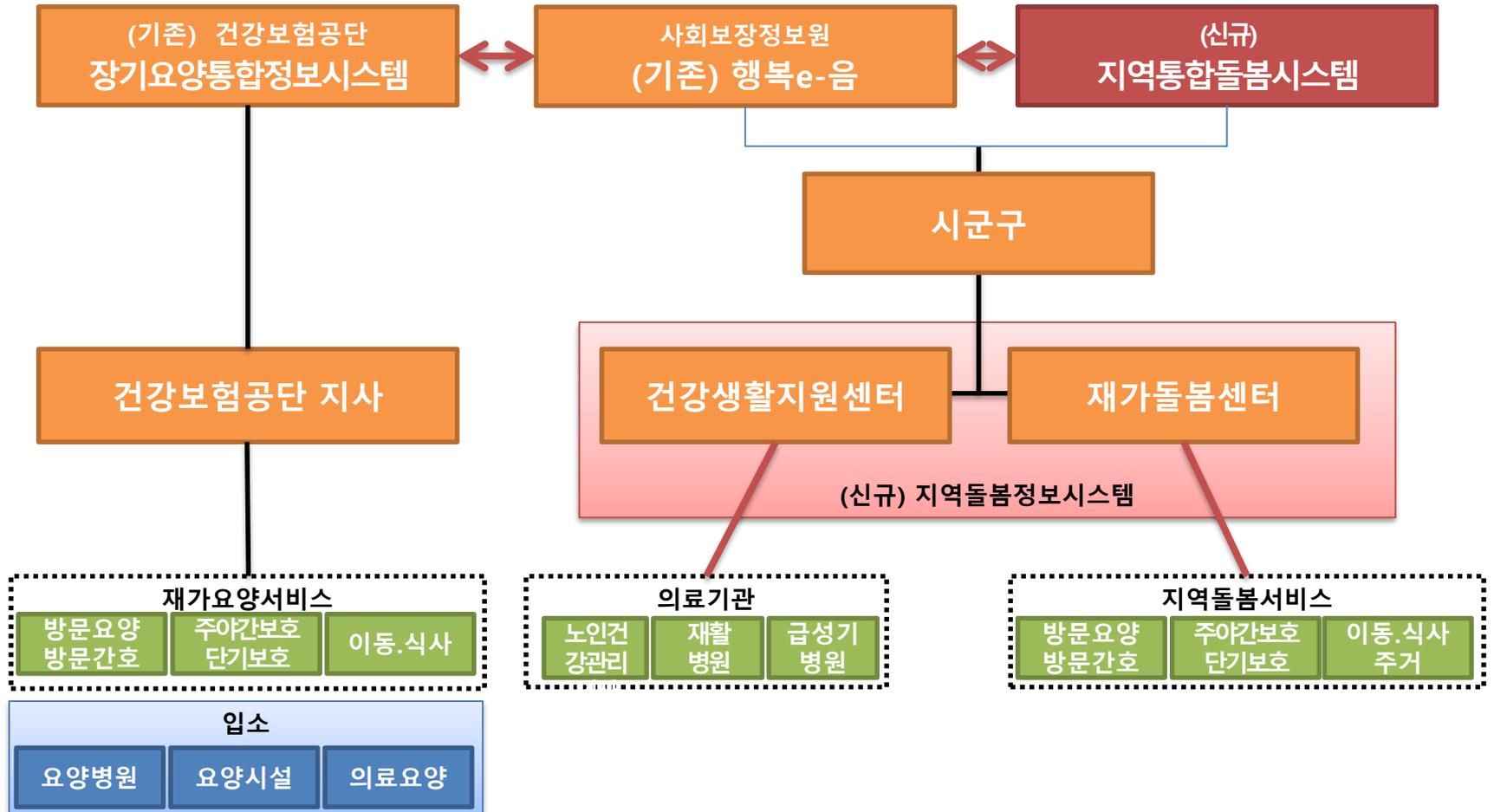
- 1안 : 지역통합돌봄
- 2안 : 장기요양 + 지역통합돌봄
- 3안 : 일차의료 + 장기요양 + 지역통합돌봄
- 4안 : 일차의료 + 입원 + 지역통합돌봄 + 장기요양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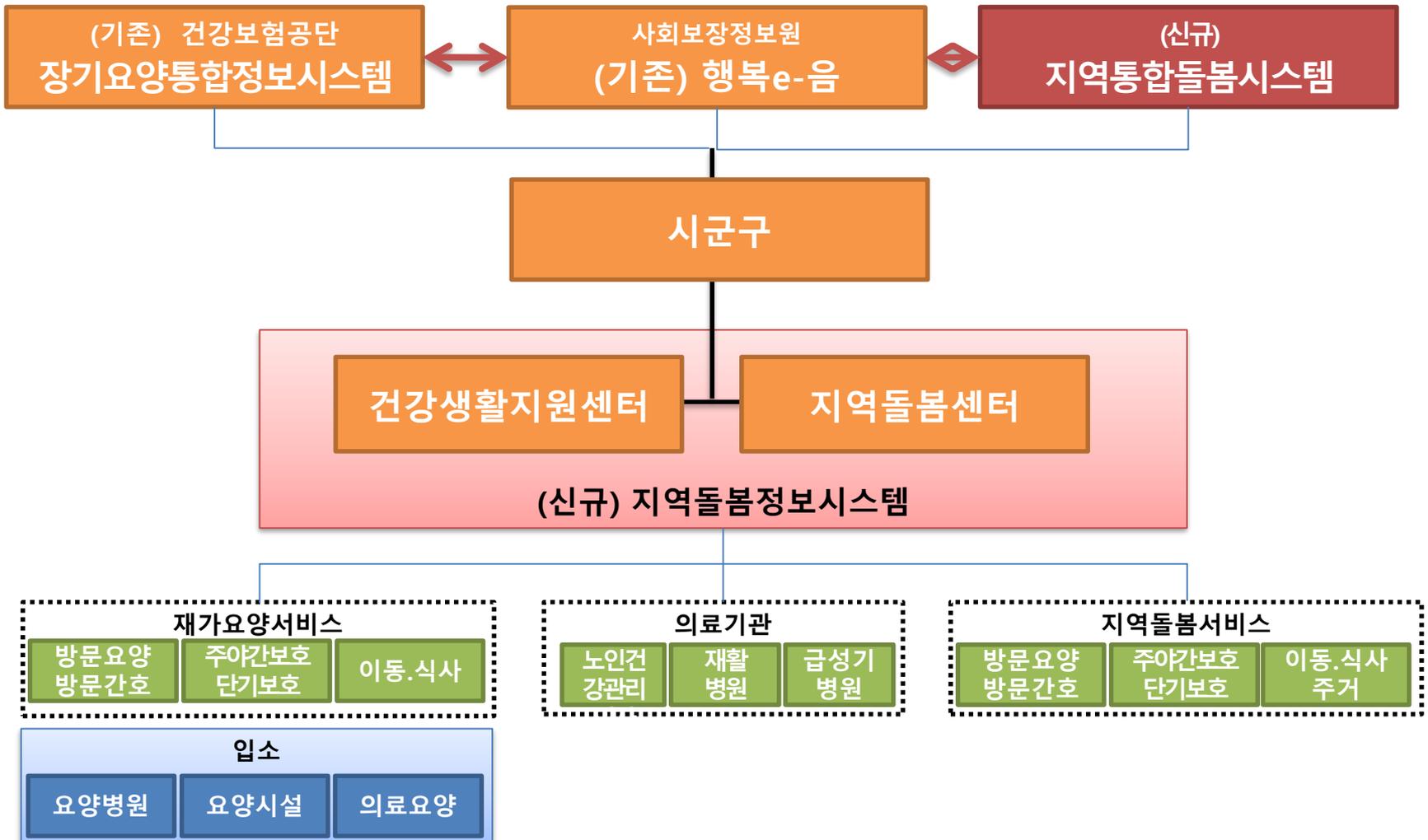


평가 범위와 인센티브 설정

정보체계(분리)



정보체계(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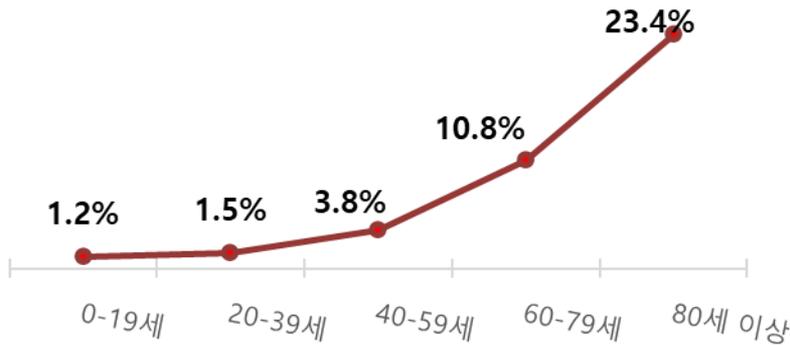


목차

- 지역통합돌봄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 돌봄통합지원법의 입법적 과제
- 지역통합돌봄과 보건의료 정책
- **장애인의 보건의료 과제**

장애인 현황

연령군별 장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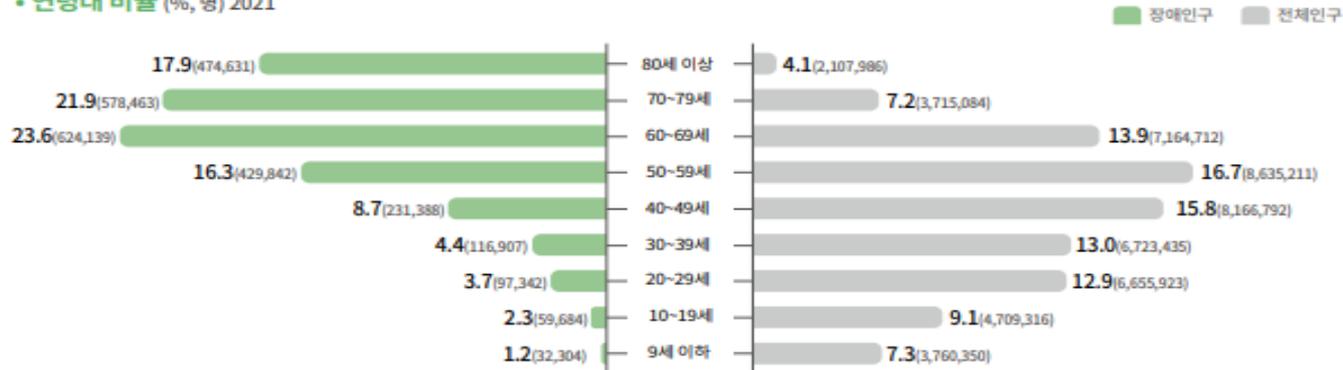


만명당 연령군별 장애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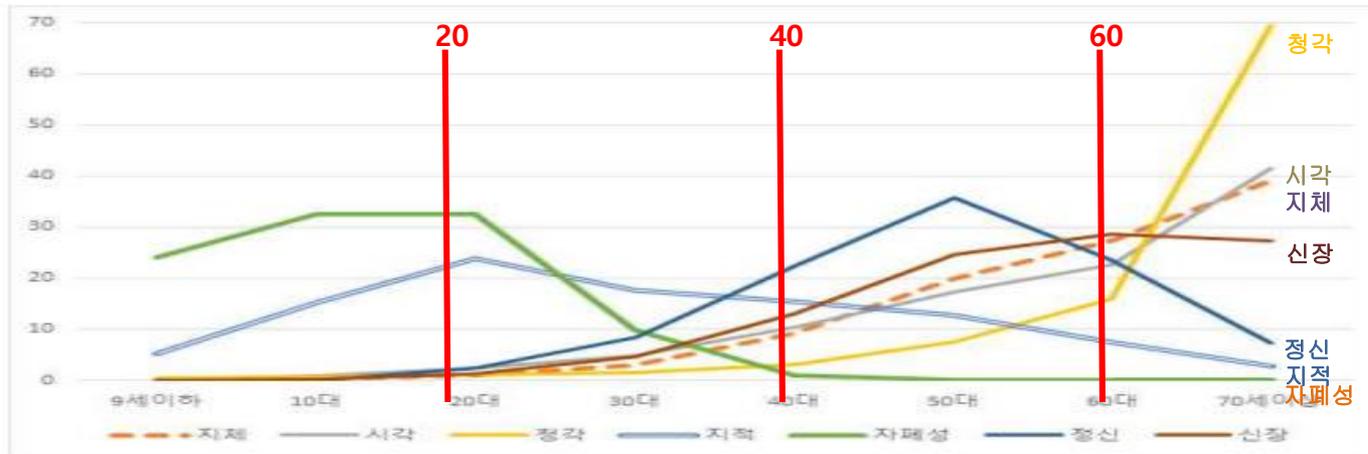
<자료> 2022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장애인 등록 현황(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연령대 비율 (% , 명)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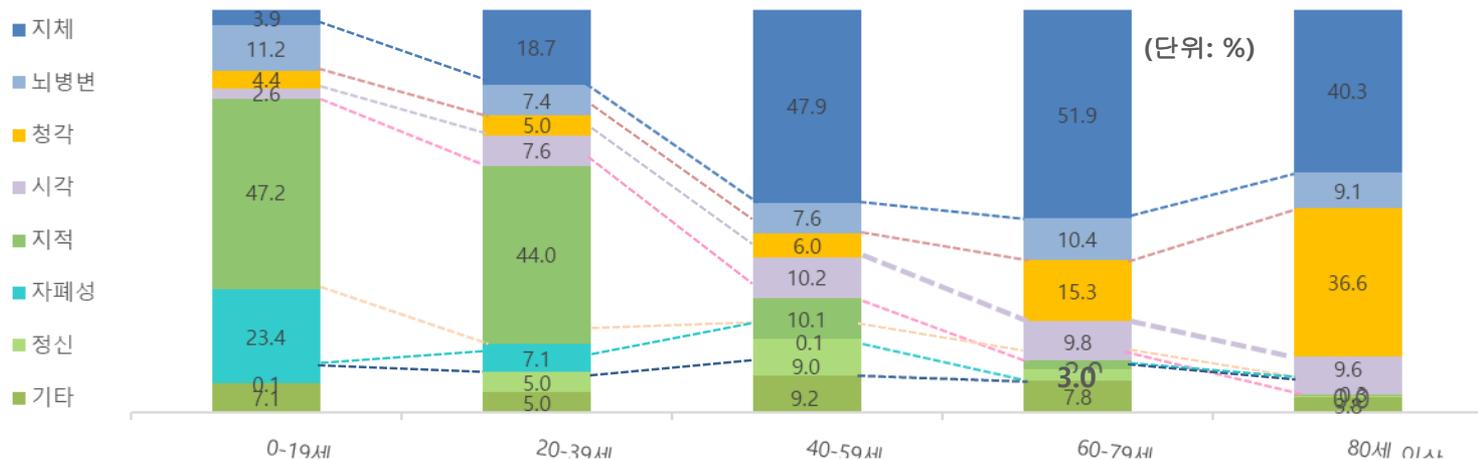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22), 한눈에 보는 2022 장애인통계

장애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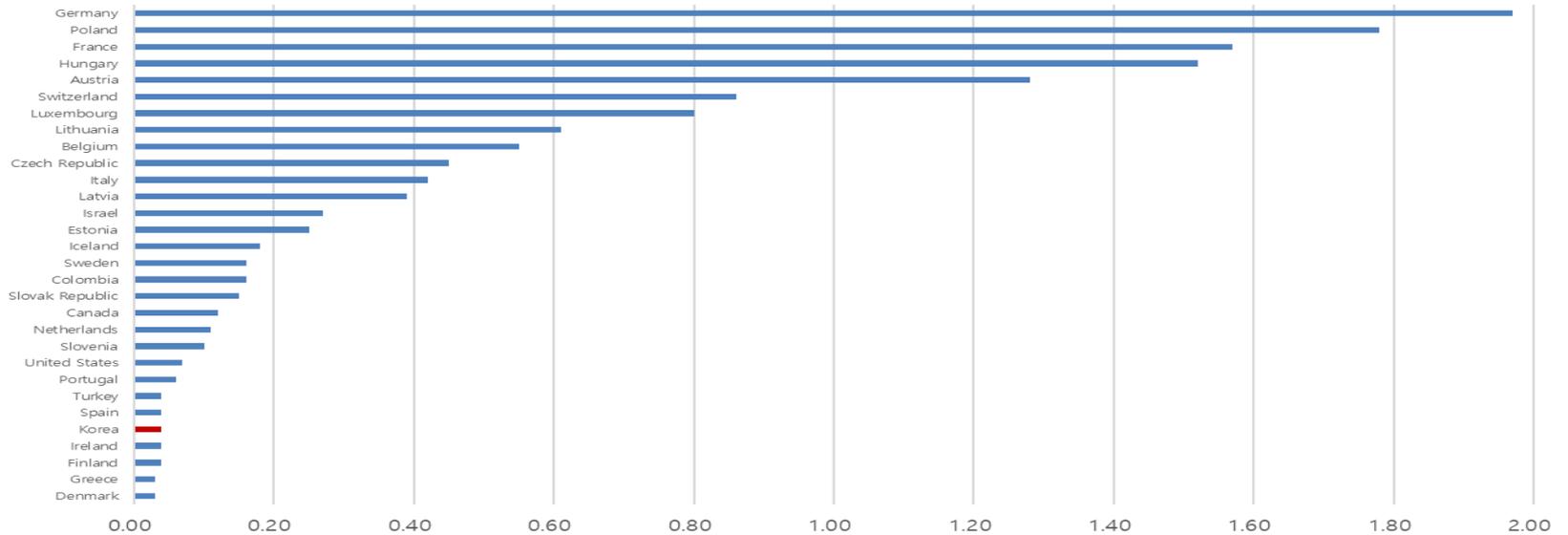
<자료> KOSIS, 장애인 통계(2019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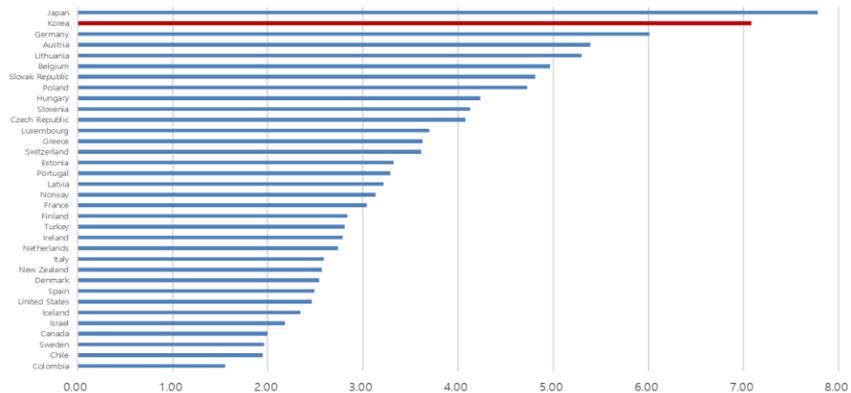
<자료> 장애인 등록 현황(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31일 기준

부족한 재활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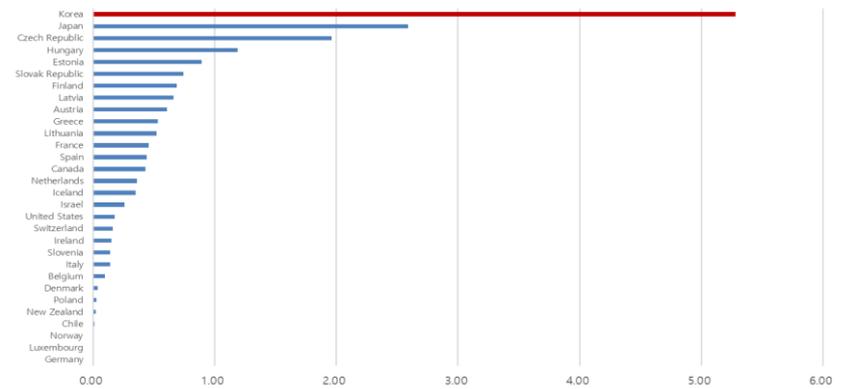
인구천명당 재활 병상수(2018)



인구천명당 급성기 병상 수(2018)



인구천명당 장기요양 병상수(2018)



* Source : OECD Health Statistics 2023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 2023년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발표
-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 7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 발표
- 9월 소아의료 보완대책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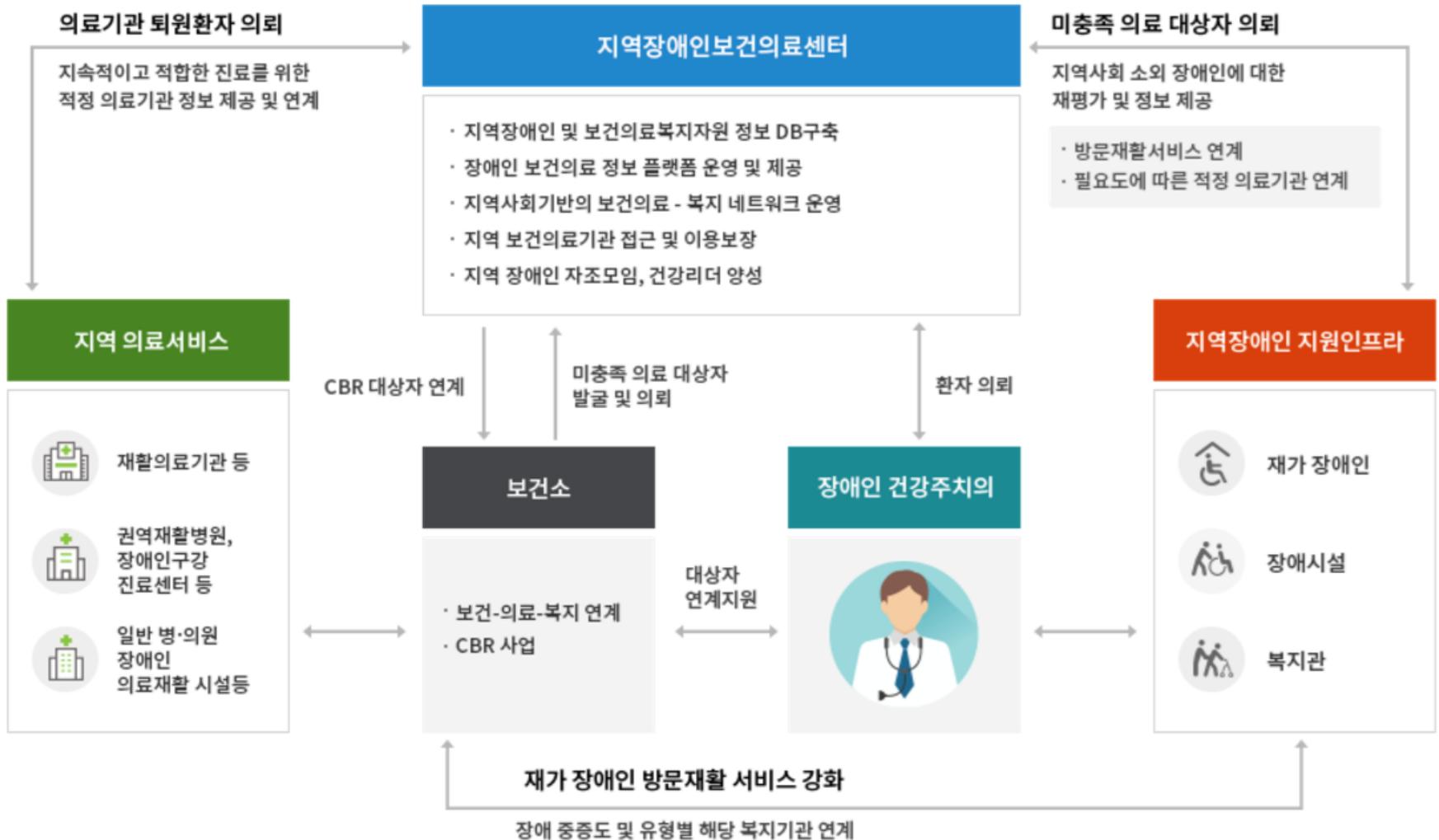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 발표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발표
- 12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 선정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자 발표
 -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 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 (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 2024년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4대) 발표
 - 의료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2024년 4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구성
 -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구체화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구분	구분	권역	병원명	선정	기본 설계 심의 완료	실시 설계 완료	착공	완공	개원	지원예산			
										국비	지방 비	계	매칭비율 (국비:지방 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병원	충남권	충남대병원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8.7	'20.9	'20.10	'21.1	'23.4	'23.5	7800	7800	15,600	5:5
		경남권	창원경상대병원	'20.6	'23.9	'24.11	'24.12	'26.12	'26.12				
	센터	강원권	강원도재활병원	'19.9	'21.8	'21.10	'22.6	'23.12	'24.3	3600	3600	7,200	5:5
			원주의료원	'20.8	'21.11	'21.11	'22.11	'25.3	'25.4				
		충북권	청주의료원	'20.10	'22.1	'22.10	'22.12	'24.1	'24.1				
		전북권	전주예수병원	'19.9	'22.11	'25.1	'25.6	'27.6	'27.6				
		전남권	호남권역재활병원	'21.6	'23.8	'24.2	'24.4	'25.3	'25.3				
			목포중앙병원	'21.9	'23.8	'23.12	'24.4	'25.3	'25.3				
		경북권	대구동산병원	'21.6	'24.2	'24.6	'24.8	'25.2	'25.5				
			안동의료원	'21.9	'24.6	'24.11	'24.12	'25.12	'26.2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지정	병원	수도권	서울재활병원	'21.7	-	-	-	-	-	750	187.5	937.5	8:2
			공단 일산병원	'21.7	-	-	-	-	-				
	센터	제주권	제주권역재활병원	'21.7	-	-	-	-	-	240	60	300	8:2

출처 : 2024년 공공 재활병원 수행기관 워크숍 자료, 24.11.19 (단위: 백만원)

원칙과 방향

- 비례적 보편주의
- 탈시설화, 독립생활의 지원
- 재활의료의 강화
- 공공병원의 역할 확대

공급구조 개혁과 과제

- 종합병원은 24시간 진료 가능한 적정 규모로 확충
- 소규모 병원은 전문병원, (어린이)재활병원 전환 유도
 - 어린이재활병원은 아급성기 및 회복기 재활 비중보다 유지기 및 사회재활 등에 강조점
- 진료권별 거점병원네트워크(협력체계) 구축
 - 권역진료권 : 권역거점(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권역(어린이)재활병원 등 간에 권역거점병원네트워크(협력체계) 구축
 - 지역진료권 : 지역거점종합병원, 종합병원, (어린이)재활병원, 전문병원 등 간에 지역거점병원네트워크(협력체계) 구축

거버넌스와 인프라 확충

- 민간 (어린이)재활병원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및 거점 병원네트워크 참여 전제로 진료권별 거점 역할 부여
- 시도 권역별 권역(공공)재활병원, 권역(공공)어린이재활 병원 단계적 확충
- 70개 진료권별 지역(공공)재활병원, 지역(공공어린이)재 활병원 또는 지역(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 지역재활병원 및 센터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설치

투입 자원에 대한 지원

- 자본 비용에 대한 지원
 - 시설, 장비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
 -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기금 신설 및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경상 비용에 대한 지원
 -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지원 : 중증도 반영 포괄수가 방식을 전제로 적정 재활시간 및 기간 반영한 공정한 지불보상
 - 예산 등을 통한 지원 : 진료권의 인구 수 등 영향으로 투입자원의 보상이 어려운 경우 지방비를 매칭한 예산 지원
 - 네트워크 성과(자체총족률, 의료비, 질) 반영한 지불보상

장애인보건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확충
 - 시도별 17개에서 시군구 당 1개씩 확충
 - 대상, 사업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인력 확충
 - 보건소와 관계 설정 필요
 - 어린이 방문재활 서비스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담당
 - 어린이주간재활보호센터 설치, 운영

장애인보건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
 - 도시 지역은 방문 진료를 포함한 그룹 개원 유도
 - 농어촌 지역은 공공 클리닉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 포함, 전문 역량의 확보 가능?
- 사례관리, 재택의료를 장애인 주치의 역할에 포함
 - 커뮤니티 케어에서 중심적 역할 담당
 - 전국민 주치의제도의 선도 모형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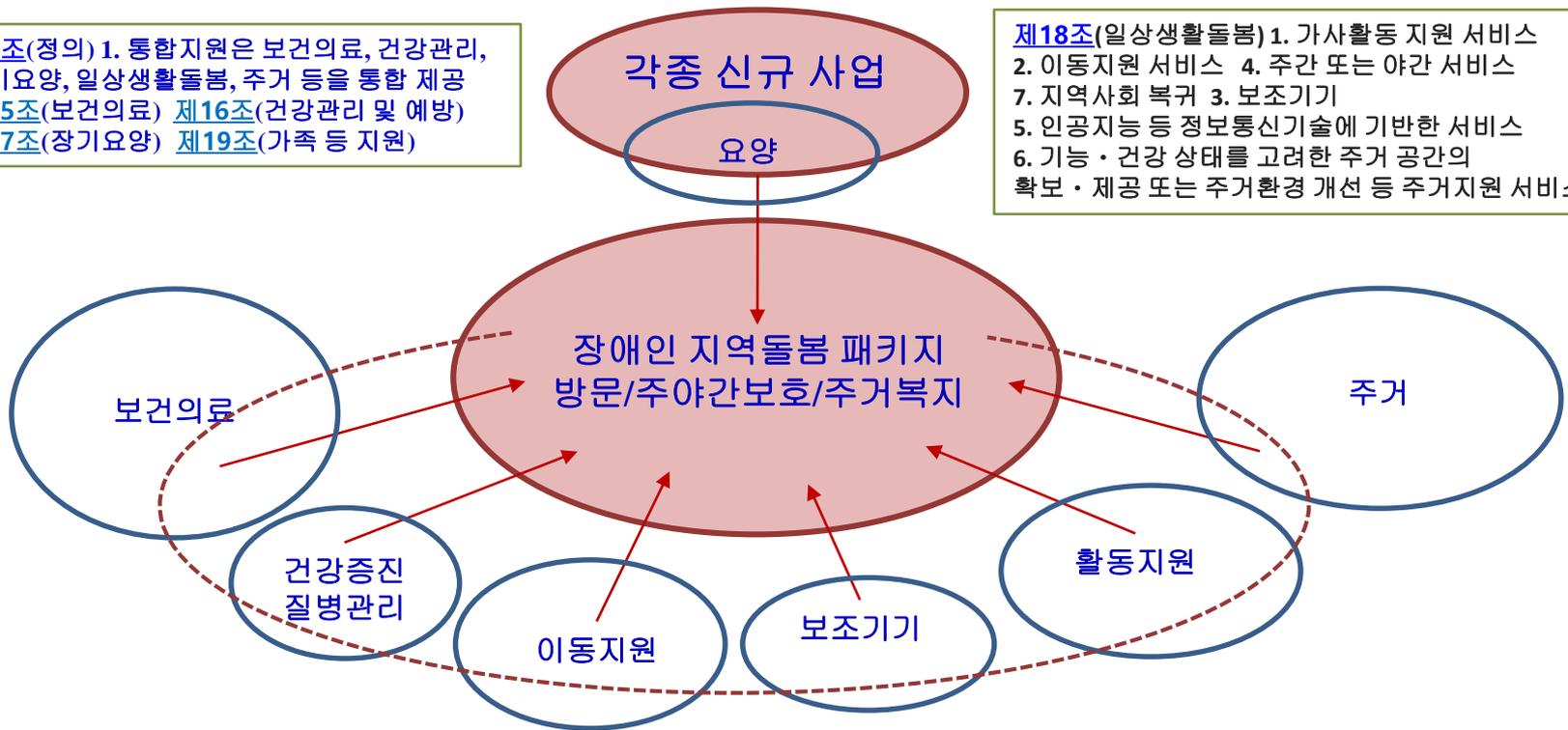
재활의료 강화

- 중진료권별 재활전문병원 확충을 통한 재활의료 불균형 해소
 - 재활전문병원 없는 중진료권에 우선적으로 공공재활전문병원 신축
 - 중장기적으로 모든 중진료권에 공공재활전문병원 확충
 - 민간재활전문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지역사회 돌봄 전략과 연동

제2조(정의) 1. 통합지원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을 통합 제공
제15조(보건의료) **제16조(건강관리 및 예방)**
제17조(장기요양) **제19조(가족 등 지원)**

제18조(일상생활돌봄) 1.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이동지원 서비스 4. 주간 또는 야간 서비스
 7. 지역사회 복귀 3. 보조기기
 5.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6.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출처 : 김용익. 2024년 장총 장애인 단체 연수교육(24.11.22)

감사합니다!